

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9-861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, 존속기한 연장과 조문 일부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조문 일부를 정비함(안 제8조)
 -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선출에서 상록수보건소장으로 조정함
 - 위촉직 위원 중 자살예방센터장 연임 제한규정을 완화함
- 나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함(안 제9조)
 -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(2030. 7. 31.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25. 8. 13. ~ 2025. 9. 2. (20일간)
- 사. 기타 참고사항
 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 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후단 중 “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”를 “상록수보건소장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상록수보건소장”을 “부시장, 상록수보건소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제7항 중 “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”을 “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2025년 7월 31일”을 “2030년 7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| 소관부서 | |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보건정책과장 | 이미경 |
| | 진료검사팀장 | 최영민 |
| | 담 당 자 (연 락 처) | 박보화 (031-481-5922) |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</u></p> <p>② 당연직 위원은 <u>상록수보건소장</u>, 단원보건소장, 복지업무 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<u>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를 따른다.</p> <p>제9조(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<u>2025년 7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 | <p>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상록수보건소장으로</u> <u>한다.</u></p> <p>② ----- <u>부시장, 상록수보건소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단,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「<u>안산시 소속 위원회</u> <u>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 <u>에</u> -----.</p> <p>제9조(존속기한) ----- -- <u>2030년 7월 31일</u>----- --.</p> |

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9-861 |
|----------|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5년 10월 30일
제안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중복 규정된 당연직 위원(부시장, 상록수보건소장)을 삭제하고,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부합하게 “안산시자살예방센터장”의 연임 규정을 수정하며, 개정 연임 규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을 신설함.

□ 주요골자

- “부시장, 상록수보건소장, 단원보건소장”을 “단원보건소장”으로 하여 중복 규정을 삭제함.
(안 제8조제2항)
- 안산시자살예방센터장의 연임 규정 “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”로 함.
(안 제8조제3항)
- 부칙 제2조 “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”를 신설하여 현재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도 개정된 임기가 적용되도록 함.
(안 부칙)

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부시장, 상록수보건소장, 단원보건소장” 을 “단원보건소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안 부칙 “제2조” 를 “제3조” 로 하고,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-|--|
| <p>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② 당연직 위원은 <u>상록수보건소장, 단원보건소장, 복지업무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</p> | <p>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상록수보건소장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----- <u>부시장, 상록수보건소장, 단원보건소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단,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| <p>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 <u>단원보건소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 |

④ ~ ⑥ (생략)

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「안산시 소속위원회
의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」에 ----
-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제2조(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④ ~ ⑦ (개정안과 같음)

부칙

제1조(시행일) (개정안과 같음)

제2조(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 (개정안 제2조와 같음)